

# 업무 협약서

경상북도교육청과 안동상공회의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함)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안동상공회의소가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,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협약 사항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기관의 법령과 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필요 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한 학생 활동을 지원한다.
- ②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한다.
- ③ 체험, 관람 활동 등에 필요한 기자재 기부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.
- ④ 향후 지속적인 업무 연계 가능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한다.

### **제3조(권리 · 의무의 승계)**

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.

### **제4조(협약 효력)**

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, 해지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서면 통보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### **제5조(후속조치)**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약서의 기본정신 준수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 협력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.

### **제6조(기타)**

이 협약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**제7조(협약서 보관)**

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2월 8일



경상북도교육감

임 종 식

임종식



안동상공회의소회장

이 대 원

이대원